제327회 시의회 정례회 환 경 수 자 원 위 원 회



「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의 견 서

(남궁역 의원)

2024. 12.

기후환경본부

기후환경본부장 여장권입니다.
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
기후환경본부 소관사안으로
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
의안번호 제2149호
「서울특별시 기후예산제 운영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본 개정 조례안은
기후예산서 및 결산서 내용을 구체화하여
기후예산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
개정 취지와 방향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.
다만, 2025회계연도 기후예산서는
기존 조례에 따라 작성되어 의회에 제출되었으므로
본 조례의 안 제5조제5항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여
2026회계연도부터 적용될 수 있게 수정 건의 드립니다.
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